2022. 7. 13.(수) 10:00
제297회 달성군의회(임시회) 제 5 차 본회의

검 토 보 고 서

달 성 군 의 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Ⅰ. 개 요

1. 제 출 일 : 2022년 6월 30일
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

3. 제안사유

○ 헌법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

– 시설이용 제한 대상 중‘정신질환’삭제(제11조제2항)

5. 관계법령

○ 「대한민국 헌법」
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Ⅱ. 검토의견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개정이유

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사전적·포괄적 배제 규정, 정신질환 등 차별적 용어 규정은 헌법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- **(기본권 침해)** 정신질환(장애)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**헌법상 기본권**인 행복추구권(제10조)·평등권(제11조)의 **과도한 침해·제한**
- **(실정법 위반)**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**정신건강복지법**(제69조),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한 **장애인복지법**(제8조), **장애인차별금지법**(제6조) 및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**지방자치법**(제28조) 등 실정법 위반

○ 주요내용

– 안 제11조제2항에 수상시설 이용 제한 대상 중‘정신질환’용어 삭제함

○ 검토의견

–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”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생활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차별적 언어(정신질환자, 정신이상자, 정신병자 등)로 표현하는 것은 장애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됨

– 그러므로,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적 용어 규정은 삭제하고,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붙임 1. 조례안 1부.

2. 관계법령 1부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“이용객이 정신질환,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”를“이용객이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이용의 제한) 1. (생략) 2. 이용객이 정신질환,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 3. (생략) 4. (생략)	제11조(이용의 제한) 1. (현행과 같음) 2. 이용객이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

참고 **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**

□ 「대한민국헌법」

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

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□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정신건강복지법)

제69조(권익보호)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, 고용,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8조(차별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,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

제6조(차별금지)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